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심사원 채용 공고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할 심사원을
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6년 10월 19일

1.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

○ 채용인원 : 총 13명

- 일반 전형(10명)

부서	등급	인원(명)
의약품정책과	심사원 가급(허가심사 규제조화)	1
	심사원 나급Ⅰ(허가심사 규제조화)	1
	심사원 나급(프로그래머)	1
의약품품질과	심사원 나급Ⅱ(신약심사)	2
임상정책과	심사원 나급(바이오시밀러)	1
	심사원 다급	2
	심사원 라급	1
의약품안전평가과	심사원 라급	1

- 일반(장애인) 전형(2명)

부서	등급	인원(명)
의약품허가총괄과	심사원 나급	1
	심사원 라급	1

- 대체근로자 전형(1명) * 기존 근무자 휴직 대체자 채용

부서	등급	최대계약기간	인원(명)
의약품허가총괄과	심사원 다급	~2027. 11. 30.	1

※ 응시 유의사항 : 응시 전형 및 부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
○ 근무지역 및 담당 예정업무

부서	등급	근무지역	담당 예정업무
의약품정책과	심사원 가급 (허가심사 규제조화)	충북 오송	ㅇ 의약품 분야 국제기구(ICH, IPRP 등) 회의에서 식약처 공동대표 역할 수행 ㅇ 의약품 규제 방향 협의 및 가이드라인 제·개정 작업 참여 총괄
	심사원 나급Ⅰ (허가심사 규제조화)	충북 오송	ㅇ 의약품 분야 국제기구(ICH, IPRP 등) 담당 ㅇ 사무국, 식약처 내 관련 부서와 진행 상황 관리 및 소통 총괄
	심사원 나급 (프로그래머)	충북 오송	ㅇ 의약품 분야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사업 관리 ㅇ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분석·설계 ㅇ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검증
의약품 허가총괄과	심사원 나급 (장애인)	충북 오송	ㅇ 의약품 변경허가, 후발의약품 허가(변경), 허여품목 민원 ㅇ 원료의약품 등록 및 변경등록 민원 ㅇ 의약품 허가 관련 법령 제·개정 지원 ㅇ DMF 관련 통계관리
	심사원 다급 (대체)	충북 오송	ㅇ 의약품 변경허가, 후발의약품 허가(변경), 허여품목 민원 ㅇ 원료의약품 등록 및 변경등록 민원 ㅇ 지침 등 제·개정 관리 업무 지원
	심사원 라급 (장애인)	충북 오송	ㅇ 의약품 변경허가, 후발의약품 허가(변경), 허여품목 민원 ㅇ 원료의약품 등록 및 변경등록 민원
의약품품질과	심사원 나급Ⅱ (신약심사)	충북 오송	ㅇ 신약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등 - 신약 품목별 평가 전담팀 GMP 평가 담당 ㅇ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ㅇ GMP 평가 관련 지침 등 개정, 컨설팅 지원, 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태 조사
임상정책과	심사원 나급 (바이오시밀러)	충북 오송	ㅇ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 임상시험 (국외)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ㅇ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(GCP) 관련 규정, 지침 등 개정업무 지원 등

부서	등급	근무 지역	담당 예정업무
	심사원 다급	충북 오송	ㅇ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업무 지원 ㅇ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(GCP) 관련 업무지원 등
	심사원 라급	충북 오송	ㅇ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등 GCP 관련 업무지원 ㅇ SUSAR, IB, DSUR 관련 사항 및 보고방법 개선업무 지원 등
의약품 안전평가과	심사원 라급	충북 오송	ㅇ 의약품의 재심사, RMP 및 재평가 관련 서류 검토 ㅇ 국내·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 검토 및 조치

※ 담당 예정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, 그 외에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음

2. 채용자격 및 우대요건

○ 등급별 채용자격기준

등급	채용자격기준
심사원 가급 (허가심사 규제조화)	○3년 이상 국제기구 근무경력 또는 5년 이상 국제협력 분야 책임자로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,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○3년 이상 국제기구 근무경력 또는 8년 이상 국제협력 분야 책임자로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,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< [영어] 국제회의 등에서 토론,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> * 담당업무 영어구사능력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 검증(구술시험 실시)
심사원 나급Ⅰ (허가심사 규제조화)	○2년 이상 의약품 분야 국제기구 근무경력 또는 3년 이상 국제협력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, 보건관련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○2년 이상 의약품 분야 국제기구 근무경력 또는 5년 이상 국제협력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, 보건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< [영어] 국제회의 등에서 토론,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> * 담당업무 영어구사능력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 검증(구술시험 실시)

등급	채용자격기준
심사원 나급Ⅱ (신약심사)	○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○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○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○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・연구실적이 있는 자
심사원 나급	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・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・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・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・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6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・연구실적이 있는 자 * 단, 6년제 약학 대학 졸업 후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.연구 실적이 있는 자는 지원 가능 ○ '국가기술자격법'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1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・연구실적이 있는 자
심사원 다급	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・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・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・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채용 예정분야의 경력・연구실적이 있는자 * 단, 6년제 약학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・연구 실적이 있는 자는 지원 가능 ○ '국가기술자격법'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・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・연구실적이 있는 자

등급	채용자격기준
심사원 라급	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○ '국가기술자격법'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○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

○ 채용관련 경력 및 분야

- 의학, 약학, 한약학, 한의학, 수의학, 생물학, 생명과(공)학, 화학, 생화학, 생화학, 유기합성화학, 분석화학, 미생물학, 분자생물학, 유전공학, 독성학, 약물감시, 사회약학, 임상약학, 약동학 등 유사분야

 * 임상정책과 : 공통 채용관련 경력 및 분야에서 한약학, 한의학 제외

- (의약품품질과) 채용관련 분야 전공자 중 의약품 제조소 GMP 관련 업무 유경험자

- (프로그래머) 컴퓨터공학, 소프트웨어공학, 정보통신공학, 정보보호학, 전산·전자공학, 정보관리, 경영정보,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처리, 정보통계 등 유사분야

○ 공통사항(면접일까지 지원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함)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○ 가점요건

구분		부가점수
법정 가점	「국가유공자법」제29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% 또는 10%

※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,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(가점 항목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
또한,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. 단,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

○ 우대요건

- 의사 또는 약사 면허증 소지자
- 공인영어성적우수자(어학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,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

구분	New TEPS	TOEIC	TOEFL IBT
점수	430	900	105

* 검정기관별 유효기관 내 어학성적에 한함.
*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3. 근무조건

가. 신　　분 :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

나. 근무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

(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)

※ 관련규정 :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」제24조(전보)

① 총괄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, 공무직근로자의 고충 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실·국 또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하거나, 다른 실·국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. 다만, 기간제근로자를 전보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.

1. 전보예정자가 전보예정직무의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

다. 계약기간

- 채용일 ~ 2026. 12. 31.

※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(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)

※ 대체근로자의 경우 최대계약기간 하단 참조

부서	등급	최대계약기간
의약품허가총괄과	심사원 다급	~ 2027. 11. 30.

라. 근무시간 : 주 40시간

마. 보수

구분	월기본급(원)
심사원 가급(허가심사 규제조화)	7,500,000
심사원 나급Ⅰ(허가심사 규제조화)	5,833,330
심사원 나급Ⅱ(신약심사)	5,000,000
심사원 나급	3,400,000
심사원 다급	2,675,000
심사원 라급	2,158,330

※ 급식비(월 16만원)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

※ 명절휴가비(6개월 이상 근무 시), 복지포인트(1년 이상 근무 시) 지급

※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4. 응시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

○ 응시일정 및 방법

- 응시기간 : ’26. 10. 19.(월) ~ ’26. 10. 27.(화)
- 응시방법 :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(http://employ.mfds.go.kr)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제출(인터넷 응시만 가능)

○ 제출서류

구분	내용
공통서류 (필수제출)	- 응시원서(시스템 입력) - 자기소개서(시스템 입력)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붙임1) - 주민등록초본(**남·녀 공통**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) - 최종학력증명서 **(석·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, 졸업증명서만 인정)** - 성적증명서(대학이상 최종학력까지) - **장애인 증명서류(장애인 전형에 한함)**
선택서류 (해당자 제출)	- 어학성적서 - 경력증명서**(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)** - 기타 면허(자격)증 사본 - 연구목록 등 기타 증빙서류 * 운전면허 제외

○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

-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
- **학력, 경력,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에 본인, 발행기관,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**
- 파일 오류 및 암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

- 학력·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
- 최종학력 증명서, 성적증명서는 이력서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시험위원에 제공되지 않으므로, 원본 그대로 스캔 후 제출

○ 면접시험 시 주의사항

- 면접시험 시작시간 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

5. 시험 방법

가. 서류전형

○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※ 학력, 경력 등 자격 요건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심사함

○ 단, 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이 응시한 경우,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합격자로 제한할 수 있음

나. 면접전형

○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

- 면접방식 : 개별면접으로 응시자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·응답
- 평가기준 : 면접위원이 면접평가요소에 따라 '상', '중', '하'로 평가하며, '상'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,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함

*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'하'로 평정하였을 경우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함

<면접평가요소>

① 식약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6. 시험 일정

채용 절차	예정 일자	비고
원서접수	10. 19.(월) ~ 10. 27.(화)	-
서류전형	10. 29.(목, 예정)	-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11. 2.(월)	면접장소·시간 등 서류합격자 채용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
면접시험	11. 5.(목) ~ 11. 6.(금, 예정)	
최종 합격자 발표	11. 10.(화)	합격자 채용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
근무시작일	추후결정	채용 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정

* 채용심사 운영상(응시인원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) 시험 일정 변경될 수 있음

7. 기타 행정사항

가.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, 근무기관(지역)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나.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, 채용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
- 합격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신원조회 ·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

다.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,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,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마.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
바.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,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,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,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(소수점 이하는 1명)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. 다만,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
사.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, 해당 분야의 다음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.

아. 면접시험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자. 담당 예정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, 그 외에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차. 채용 시 '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'에 의거 업무 관련 분야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금지됩니다.
(※ 문의 : 의약품정책과 ☎043-719-2649)

8.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

○ 기본증명서 1부

○ 주민등록등본·초본 1부
(남녀 공통제출,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)

○ 최종학력증명서 1부

○ 반명함판 사진, 흰색바탕 사진파일 제출
(JPG, 해상도 300이상, 354픽셀* 472픽셀)

○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붙임 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(제17조제1항 관련)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

☐ [필수]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-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국적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은행, 계좌번호, 전자우편주소, 학력, 학위, 수상실적, 경력·재직사항, 가족사항, 차량번호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급여지급,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·복무 기록관리, 청사출입관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[필수]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처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.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	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	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※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 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붙임 2.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(제24조제2항 관련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**비위면직자등**은 **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**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**공직자**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□ 비해당 □
2. **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**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□ 비해당 □
3-1. **해당 부패행위**로 **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**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3-2. 위 **퇴직일**(당연퇴직 · 파면 · 해임일)로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□ 비해당 □
4-1. 해당 부패행위로 **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**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4-2. 그 형의 **집행이 종료된 날**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(5년 내)	해당 □ 비해당 □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□ 비해당 □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□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 지 원 자 (서명)